과천도시공사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25.04.11. 지침 제89호
개정 2025.08.08. 지침 제92호
개정 2026.11.13. 지침 제11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1. 13.)

제2조(적용범위)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11. 13.)

제3조(정의) "여유자금"이란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 포함)하여 말한다.(개정 2026. 11. 13.)

제3조2(운용자금의 분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26. 11. 13.)

1.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이 있는 자산으로 운용되는 자금
2. 만기가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
3. 자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금

제4조(운용상품) ① 여유자금의 운용상품은 정기예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예금을 제외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형(국·공채) 수익증권, 국·공채 및 우수 신용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MMF, MMT 등의 상품은 사장의 결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08.08.)

② 금융기관 및 운용사와 금융상품을 선정하는 경우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자금의 입출규모 및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부 여유자금은 과천도시공사 주거래은행 약정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삭제 2025.08.08.)

제4조2(자금운용) 자금관리부서는 여유자금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11. 13.)

제5조(운용절차) ① 자금관리부서는 자금수지계획, 과거 통계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금의 예측, 조달, 운용을 철저히 하여 자금 부족을 방지하고 자금의 수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6. 11. 13.)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별로 결재를 받아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08.08.)(개정 2026.11. 13.)

1. 가입금액이 50억 원 이하: 자금관리부서의 장
2. 가입금액이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경영부문장(개정 2026.11. 13.)
3. 가입금액이 100억 원 초과: 사장(개정 2026. 11. 13.)

③(삭제 2025.08.08.)

제6조(운용상품 재투자)_① 단기자산 만기도래상품의 재투자는 유동성이 주요 고려사항이므로 운용상품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상품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재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중장기자산 만기도래상품의 재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결정한다.(개정 2026. 11. 13.)

제7조(성과평가)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기별 및 연간 자금운용 성과를 평가한다.(개정 2026. 11. 13.)

부 칙 (제정 2025.04.11. 지침 제8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8.08. 지침 제92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11. 13. 지침 제11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